

인적자원의 인적자산화 과정과 자산유형

정 기 오*

목 차

요약	
1. 서론	3.2 실체적 인적자산의 공시
2. 지식 역량의 체화 사적자산화	3.3 관계적 인적자산의 공시
2.1 자산화 과정	4. 종합논의 및 결론
2.2 인적자원의 인적자산화	4.1 종합논의
2.3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	4.2 결론
3. 인적자산의 공시와 자격	참고문헌
3.1 자산 공시의 원칙	Abstract

요약

서비스가 과정이라면 지식과 역량 등 인적자본은 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appropri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또한 이러한 사유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회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사유화(appropriation)임을 밝힌다. 특히 서비스경제 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와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광범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체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표제어: 서비스, 자산화(appropriation), 실체적 인적자산, 관계적 인적자산, 인적자산공시

접수일(2019년 4월 29일), 수정일(1차:2019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24일)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kiohjeong@daum.net

1. 서론

서비스를 간명하게 정의하자면고객을 위하여 역량을 행사하는(application of competences for the benefit of another)” 과정이다.(Spohrer et al. 2007) 이 개념정의에서역량”이란 지식, 기능, 태도 등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실체를 말한다. 서비스는 이 역량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현대의 선진 서비스경제는 이 역량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위에서 발전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법적 보호에 대한 연구 작업으로서 두 개의 상호 연관된 주제를 탐구한다.

우선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적 지식과 역량이 개인에 귀속되어 사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밝힌다. 영어사용권에서 <appropriation>으로 명명되어 근대적 사유재산권 제도의 근거로 지목된 과정이 무형의 지식과 역량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른 하나의 주제는 appropriation을 통해 사적 자산화 된 무형의 지식과 역량이 어떻게 표시-공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 중 자격제도와 무체재산법제의 기능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주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의 토대로 사용된 준거는 근대적 재산권 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윤곽이다. 지식경제, 서비스경제 시대의 인적자산은 물적자산 중심의 근대적 재산권제도 발전과 본질적으로 거의 유사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물적자산이든 인적자산이든 인간의 경제적 활동과 그 산물의 축적 과정 속에서 법제가 형성 발전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양자는 유사할 수밖에 없다.

2. 지식/역량의 체화 사적자산화

사적 소유권이 확립되기 전의 일체의 자원은 공유상태에 놓인다. 역량 또한 동일하다. 이 상태에서는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역량

이 사적자산이자 법적보호대상으로 전화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2.1 자산화(appropriation)과정

자연 상태의 토지 등 자원은 누구나가 이용하는 공유자원일 수밖에 없다. 이 토지를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관리 이용하고 수익하기 시작하면서 사유자산화의 계기가 마련된다. 바로 그 사람과 토지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며 존 로크는 이 과정을 appropriation이라 불렀다.(Elleman,2014) 내 것으로 하다.” 라는 뜻이다. 이 appropriation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욕망(desire)과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점유 형태가 되었던 선언 형태로 나타나는 통상 무주물 무주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기초가 되는 법적 구성요건이다.

appropriation을 보는 철학적 정치적 관점은 로크, 헤겔, 마르크스가 서로 달랐다. 로크는 주체의 욕망과 의지의 본질적 성격이 재산권에 투영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재산권(property)을 일신의 자유와 같은 천부인권으로 보았으며 재산을 인격의 일부로 까지 간주한다.(김종철, 2016) 로크의 appropriation에 대한 이해에 따라 자유주의 내에서 좌파와 우파가 갈라진다.(Kogelman & Ogden, 2016)

헤겔은 인간이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밖의 대상에 드러내어 외화하며 이로써 그 appropriation을 타인이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는데 주목하여 소유권을 설명한다.(Hidalgo, 2013: 139-147). 로크와 헤겔의 차이는 전자가 노동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선점을 중시한 것에 비해 후자는 주체의 의지를 강조함에 따라 소유선언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이어지는데 있다.

한편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이 제품에 반영되는 과정을 appropriation으로 보고 그 과정은 제품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의 소외(alienation)를 낳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Hidalgo,

2013:142) 이러한 소외의 과정은 헤겔이 일찍이 인간 정신의 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간파한 바 있으나 마르크스는 이 논리를 자신이 생산한 상품으로부터 소외되는 노동에 적용하였다.¹⁾

토지 등 자연자원이든 새로이 생산되는 상품이든 그에 대한 소유권이 최초로 확립되는 과정이 appropriation이라고 볼 때 이 과정은 법률가와 판사가 개입하는 보이는 법적 과정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진” 사실적 과정인 경우가 많다.(Ellerman, 2014:3)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철학적 원리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소유의 주체와 그 주체 밖에 있는 물적 소유의 대상 간의 관계가 확립되고 지지되는 과정이기에 특히 공리적 원리적 질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2.2 인적자원의 인적자산화

로크의 appropriation이론은 토지와 관련 하여는 여전히 토지사유제를 비판하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대 지식서비스경제 하의 무형자산, 유전자 등 신종자산등과 관련하여 더욱 그 논리적 타당성이 주목되고 있다.(Widerquist, 2010:5) 이 논문에서 인적자원의 자산화 과정을 논하는 이유가 바로 이에 있다.

우리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2조는 인적자원을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 법정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즉 인적자원이란 인간이 지니는” 것이며 학습을 통해 개인에 체화된(embodied)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체 밖의 물적 대상인 물적자원이 자산화 되는 appropriation 과정이 쉽게 포착 정의되기 어려운 과정임에 반해 인적자원이 처음부터 개인

에게 체화되어 있다는 것은 학습주체가 그 학습 내용을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적자산화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과정 자체가 appropriation의 과정이라는 것은 비고츠키 심리학이나 그 계보를 이은 활동이론에 입각한 학습이론의 기본 명제 중의 하나이다. 바로 학습과정 자체가 appropriation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Engestrom, 2007)

쉽게 말해서 학습의 주체가 학습 내용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바로 appropriation이며, 이는 로크가 물적자원을 사적 자산화 하는 appropriation의 과정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정이다. 학습 내용을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고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학습 내용은 온전히 내 것이 되며 이러한 행위가 바로 appropriation인 것이다.

공유상태의 자연자원 예를 들어 광대하게 펼쳐진 자연 상태의 토지가 사적자산화 되는 과정은 대단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며 토지의 분할과 측량,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작성 등 오로지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방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반면 인적자원은 처음부터 개인의 몸 속에 체화되기에 훨씬 쉽게 개인의 인적자산화 되면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에 체화된 인적자산은 헌법적 자연법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일신의 자유(individual freedom)의 보호대상이 되어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며 그를 통해 법적인 재산권(property)로서의 성격을 띠게 된다. 재산권이 인격적 자유의 일부로서 천부적 자연권의 핵심이라는 말은 물적자산보다 인적자산의 경우에 더욱 타당하다. 통상 인적자본이 물적자본보다 훨씬 사유제도와 시장체제에 친화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사실 이 문제는 공장노동의 문제이지 노동일반의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수제품 악기 생산자는 자신의 악기를 자신의 이름 인격을 결부시켜 판매하며 이 점에서 로크의 인격-재산이론의 전형적 모습을 구현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물적 재산권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탈속권>이론으로 이어지면서 인적자본론을 이해할 수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2.3.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

지금까지 사적자산화 (appropriation)의 주체가 학습의 주체와 일치 되는 경우를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appropriation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흔하게 생겨난다. 다음 표에 여러 가지 사례를 정리해보았다.

Tab. 2-1 Examples of Human Intangible Properties

인적 자산 Human Property	학습주체-자산화 주체간 일치여부	법적 경제적 관계(context)		
		학습(HRD)의 법관계	획득(HRM)의 관계	사용(HRU)의 법관계
학업 성취도 인증	일치	인증계약	학습평가	인적거래시 사용
학력-학위-자격	일치	교육-학습계약	학습평가	인적거래시 사용 행위적격 증명
고객 관계 (ex. 신문 구독자)	불일치	신문구독	고객측정 (발행부수 인증)	광고료 책정
신용	불일치	거래와 영업과정	신용 평가	대출심사 자료, 권리금
표준인증	일치	인증을 위한 학습과 자문	인증평가/ 처분	표준인증 부착
저작권	불일치	저작물 구독 학습	창의/창작	타인의 침해 배제
영업 비밀	일치	노하우 개발	창의/창작	타인의 침해 배제-비밀 보호
특허권	일치 불일치	발명 기술이전	창의/창작	특허 실시계약
저작권 재산권	일치 불일치	저작, 구독 학습	창의/창작	저작실시료
디자인	일치	디자인개발	창의/창작	디자인 사용계약
trade-marks	불일치	광고커뮤니케이션	창의/창작	타인의 사용 배제
상호	불일치	광고커뮤니케이션	창의/창작	타인의 사용 배제

위의 표에서 예를 들어 trademark 브랜드자산의 경우를 보자. 고객들은 브랜드사업체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여 알게 된다. 이 때 학습은 고객이 하게 되나 브랜드 자산가치를 획득하는 것은 브랜드 소유자이다. 학습주체와 appropriation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유네스코 21세기 교육위원회 보고서(Delors Report)는 지식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에 관한 정보획득으로 정의 하였다.(Unesco, 1996). 전통적 지식개념인 <왜, 어떻게>를 넘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까지로 지식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이야말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에서 생겨난다. 고객은 서비스사업체와 서비스제공자가, 어떤 품질의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 제공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단골고객이 되어 간다. 학습의 과정이며 지식획득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으로 형성된 <인적자원>을 인적자산 무형자산으로 appropriation 하여 사유자산화 하는 주체가 바로 브랜드 소유자이다. 학습의 주체와 appropriation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2개의 인적자산이 구별된다. 본 연구자는 학습의 주체와 appropriation의 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실체적 인적자산>으로, 학습의 주체와 appropriation의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정의 한다. 오늘날 인적자본/지식자본 경제의 주축은 바로 후자의 관계적 인적자산을 토대로 하고 있다. 소설 등 저작물을 독자가 읽고 학습할수록 저작권자의 저작자산가치가 올라간다. 작곡가 편곡자의 악보를 연주자와 청중이 공부하고 즐길수록 음악저작권의 자산가치가 올라간다. 특허를 사용허가 받아 공부하고 이용하는 특허실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허권의 무형자산 가치는 올라간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서비스경제 미국경제의 대표기업의 자산가치는 바로 이러한 관계적 인적자산이다. 학습하고 공부하는 자

가 아닌 그 자원을 appropriation을 통해 사유자산화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유네스코가 21세기교육위원회 보고서는 전통적 지식을 넘어서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에 관한 정보획득을 학습으로 확대해 정의한 것이다.

본 절의 소결론이다. 자연 상태의 인적자원은 자연 상태의 물적자원(ex. 토지)와 마찬가지로 정치공동체의 공유 즉 국가주권에 복속된다. 그러나 appropriation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습의 주체가 스스로 appropriation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전통적인 <appropriation학습>의 과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학습의 결과는 공유자원으로 남는 상황에서 appropriation 작업을 통해 이 자원을 자신의 사유인적자산으로 획득하는 과정이 인적자본/지식자본경제에서는 상시 일어난다. <왜, 어떻게>에 관한 복잡한 학습은 학습자 아닌 타인이 appropriate하기 어렵다. 반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지식처럼 단순한 지식은 학습자 아닌 타인이 appropriate하기 쉬우며 이를 통해 학습자 아닌 appropriator가 관계적 인적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서비스경제의 시장과정, 지식경제의 인적자본 중심의 핵심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적자원은 인적자산을 거쳐 시장생산 과정에 투입될 때 인적자본이 된다. appropriation은 그 과정의 핵심 단계임에도 그동안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3. 인적자산의 공시와 자격

3.1 자산 공시의 원칙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재산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타인에게 명확하게 표시되고 알려져야 한다. 이 때문에 재산권법제의 대표적 법제인 물권법을 지배하는 원칙 중의 중요한 하나가 바로 <공시의 원칙>이다.(곽윤직 김재형, 2015). 사람이 소지할 수 있

는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와 소지가 바로 타인의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저절로 공시가 된다. 점유하지 않고 소유가 가능한 자산인 부동산(不動産)의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한 공시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지적도,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가만이 이러한 <공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적자산의 경우에도 물적자산과 마찬가지로 <공시>는 필수적이다. 그래야 타인들이 그 인적자산을 확인하고 그 인적자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고 존중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동산 부동산 등 물적자산과 달리 인적자산은 무형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인적자산의 경우는 물적자산보다 공시의 방법이 훨씬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토지의 경우보다 appropriation 과정이 분명한고 쉬운 반면, 무형의 자산인지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to make invisibles visible) 하기 위해 지적도,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 물적자산의 공시제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인적자산의 공시제도이다.

3.2 실제적 인적자산의 공시

우리가 흔히 교육은 과정이다.”라고 말할 때 그 과정이 법적으로는 학교와 학생 간 교육학습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그렇게 형성된 학습의 결과에 있다. 학습의 결과는 단순히 심리적 사실적 실체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으며 법적 실체로서 법과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영미법에서는 학습의 성과로 획득된 졸업장 학위 자격 타이틀 등이 기본 권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인 <property>로 간주된다. 바로 이점이 중요하다. 권리로서의 학습은 단순한 급부청구권, 배제청구권을 넘어서 재산권과 같은 일종의 법적 실체임을 법학 이론이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구 교육법이 한 때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 <자

격>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던 이유가 바로 이에 있으며, 현행 교육기본법이 그 제26조에서 학습의 평가와 인증”을 별도 조문화한 이유도 이에 있다. 학점은행에 관한 법률, 독학학위제도, 등 학습성취의 법적 실체인정에 관련된 법제는 교육법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정기오, 2015:2-32)

물적자산인 토지가 지적측량의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비로소 토지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부를 통해 공시가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자산 역시 측정되어야 비로소 눈에 보이고 공시될 수 있다. 교수학습과정 중의 형성평가 아닌 종국평가로서의 학습성취도 평가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지적의 측량이나 학업성취의 측정이나 각각 토지자산 인적자산을 객관화시키는 지표를 산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 인적자산의 공시 과정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Fig. 3-1 Learning Assessment to Qualification ²⁾
source: Jeong(2006: 19)

위 그림의 과정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즉 지식, 역량, 태도들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눈에 보이는 실체로 나타나도록 하는 과정이다. 지식과 역량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거나, 자격증 또는 졸업장을 주는 것, 기술/신용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인적자원의 인적자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제도를 형성해 나가는 인간 활동이 지니는 근본적 양상이기도 하다. 다음의 그림들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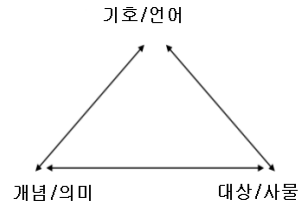


Fig. 3-2 Semantic Triangle
source: Ogden & Richards(1923)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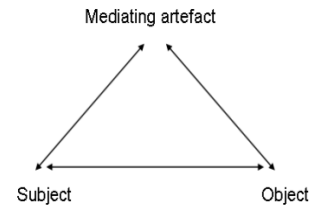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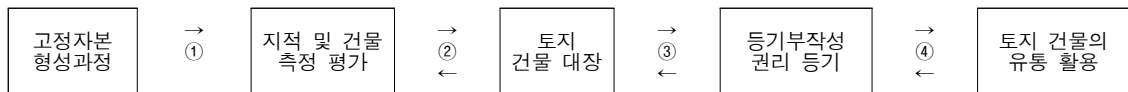


Fig. 3-3 Vygotsky Triangle
source: Torpe(2015)

인간은 그 온갖 활동 중에 의미나 개념을 형성한다. 그 삼각구조의 한 상대편에는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과 사물이 있는 한편, 또 다른 상대편에는 인간이 이를 대표하는 기호나 상징을 창조하여 그 속에 이러한 개념과 의미를 담는 것이다. 상기 Fig. 3-2s는 이러한 구조를 오그든과 리차즈가 요약하여 제시한 의미삼각도이다. 이 같은 의미의 생성과 기호의 사용과정은 비고츠키에 의하여 다른 관점에서 그려

2) 이러한 인적자원의 형성·평가·자산화 과정은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건축 및 토지개발을 통해 형성된 실체를 지적측량과 평가를 거쳐 구획 및 토기건물대장기록화 하고 등기부가 만들어져 비로소 부동산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Fig. 3-3의 동일한 삼각도를 통하여 표시된다. 비고츠키는 주체가 객체를 대상으로 특정한 도구나 매개물을 통하여 작용하는 삼각형의 구조로 인간행위를 구조화하였다. 행위주체가 의미나 개념 형성의 주체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러한 개념과 의미를 담는 기호나 언어가 매개도구(mediating artifact)라고 보면 오그든과 리차즈의 의미삼각도와 비고츠키의 인간행위 삼각도는 동일한 내용을 관점을 달리하여 표현한 것이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 또한 인간활동이 취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삼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적자원의 자산화 과정 역시 이러한 삼각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사실상의, 개념상의, 그리고 추상적인 지시대상인 인적자원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순간 그를 담는 사회적 제도적 표지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나의 역량과 지식은 자격증, 시험점수 등으로 표시된다. 인적자원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거래(transaction)나 입증(proof)의 과정에서 합법적(legitimate)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이들 제도적 표지들이며 이들은 보이지 않는 지식과 역량 같은 사실적 실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법적 실체-즉 자격과 자격증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OECD, 1994) 인적자원이 실제적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은 이렇게 직업자격증뿐 아니라 졸업장과 학위를 포함한 <자격제도>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다.

3.3 관계적 인적자산의 공시

학습자와 별개의 그러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학습자의 학습에 의해 형성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인적자원을 자기 자신의 사적자산으로 appropriate하는 관계적 인적자산의 경우에도 객관적 공시는 필수적이다. 이 때의 공시방법도 국가가 나서서 하게 되는 경우와 시장사업자가 공시과정을 담당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공시제도의 대표적 사례가 특허권이다. 특허의 출원

과 심사, 등록 과정은 대부분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단체가 담당하며 특허등록의 내용은 상세하게 공개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마치 부동산 등기부처럼 공시되는 것이다. 등록된 특허의 소유자는 실시계약(licence contract)을 통해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특허내용이 되는 지식과 노하우를 학습하도록 한다(기술이전”으로 불리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없으면 특허등록은 되어 있을지라도 경제적 자산가치는 없는 <강통특허>에 그치게 된다. 즉, 실시자의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특허 소유자의 특허 자산 가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시장사업자가 무형자산의 측정과 공시과정을 담당하는 경우의 사례는 신문의 구독발행부수심사제(ABC: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를 들 수 있다. 신문구독자는 신문을 보면서 무의식중에 학습을 하게 되며 신문사는 이러한 고객의 학습규모(volume)를 자신의 무형자산으로 appropriate하여 광고수익을 올리는 무형자본으로 삼는다. 발행부수심사는 바로 이렇게 형성된 무형자산을 측정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며 이를 국가 아닌 ABC협회가 담당한다. 방송의 경우에도 시청률을 중심으로 유사한 측정평가 제도가 발전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얼마든지 관계적 인적자산의 측정 평가 공시 활동을 수행하며 브랜드자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계적 인적자산(무형자산)의 측정 공시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 3-4 Appropriation and Circulation of Intangibles

4. 종합논의와 결론

4.1 종합논의

산업사회의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과 세계관의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서비스경제와 서비스정책은 이러한 새로운 개념과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서구 근대산업사회 이후부터의 장기 자본축적의 과정은 대표적 물적자산인 토지/건물을 중심으로 산업화시대 낡은 개념과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노동을 불변자본으로 파악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노동력과 노동을 구분하고 실제인 노동력에서 시간으로 측정되어 임금과 교환되는 노동-상품노동이 흘러나온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산업화시대 노동력-상품노동의 논리를 대체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인 서비스 시대의 역량-서비스 논리이다. 마르크스의 <노동력>이 제도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추상적 이념적 실체임에 반해 서비스 역량과 서비스 논리에서는 학습으로 형성된 지식과 역량이 정부나 시장에 의해 측정/공시되어 무형자산으로 전화(轉化)되고 그로부터 인적자본, 지식자본, 문화자본이 탄생하며 시장서비스경제가 구현된다.

서비스경제의 토대가 되는 지식, 기술, 문화 등 인적자원이 인적자산으로 전화하는 계기에 초점을 둔 본 연구는 그간의 서비스사이언스 연구를 생산중심논리 (PDL: production dominant logic)에서 서비스중심논리 (SDL: service dominant logic)으로 전환하자고 제창한 Lusch & Vargo(2006)의 SDL논리를 자산-자본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보완 구체화 하기 위한 검토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조(production)에서 서비스로>의 이행과 전환은 <노동에서 서비스로>의 시대적 이동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며 이를 인적자원 지식자원 등 무형의 자원이

자산화 하는 과정을 통해 명료화하여 역량-서비스를 보는 통합적 틀 마련을 시도한 것이 본 논문이라 할 수 있다.

4.2 요약 및 결론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 (appropriation)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 (human resources)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화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밝혔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자산화 (appropriation)과정임을 지적한다. 특히 서비스경제 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 (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 서비스경제에서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본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와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제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제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1] Adler, Paul S, (2004), From Labor Process To Activity Theory, in P. Sawchuk, M. Elhammoumi, and N. Duarte, eds.(2004) Critical Perspectives on Activity Theory, Education and Work: An International Colle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 Ellerman, David, (2014), On Property Theo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 manuscript to the Journal of Economic Issues (Sept. 2014).
- [3] Engestrom, Y, (2007), Putting Vygotsky to work: The Change Laboratory as an application of double stimulation, in H, Daniels, M, Cole and J, V, Wertsch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Vygotsk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 Hidalgo, Desiree, (2013), Ownership and private property from the perspectives of Hegel and Marx, The Agora: Political Science Undergraduate Journal Vol. 3 No. 2, pp. 139-147.
- [5] Hunter, Laurie, (2002), Intellectual Capital: Accumulation and Appropriation, Melbourne Institute Working Paper No, 22/02.
- [6] Jeong, Kioh, (2015), Basic Concepts and Frame of National HRD Policy, Korean Education Policy Studies Vol.2, pp. 1-32 (정기오 (2015) 인적자원정책의 기초개념과 준거틀. 교육정책연구 2집, pp. 1-32)
- [7] Jeong, Kioh, (2006), Educational Test and Democracy, KSI (정기오(2006). 시험성과과 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
- [8] Jonathan, Nitzan, (1998), Differential accumulation: towards a new political economy of capital,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5 No. 2, pp. 169-216.
- [9] Kim, Hyungkee, (2006), The Knowledge - Led Accumulation Regime: A Theory of Contemporary Capitalism, paper Presented to the French-Korean Regulationist Workshop, University of Paris 13.
- [10] Kim, Jeongchu, l(2016), Locke' s Property and Person: What ontological implications does Locke' s notion of property hav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0, No.4, Sept. 2016, pp.25-50.(김종철 (2016), 로크의 재산(property)과 인격(person) : 로크 재산 개념에 어떤 존재론적 함의가 있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4호, pp. 25-50).
- [11] Kogelmann, Brian and Benjamin G, Ogden, (2016), Enough and as Good: a Formal Model of Lockean First Appropriation, Unpublished paper.
- [12] Kuak, Younjik and Kim Jaehyung, (2015), Property Law, Parkyoung Press (곽윤직, 김재형(2015), 물권법. 서울, 박영사).
- [13] Lusch, R. F. and S. L. Vargo eds, (2006), The Service-Dominant Logic of Marketing: Dialog, Debate, and Directions, M,E, Sharpe.
- [14] Oded, Galor and Omer Moav, (1999), From Physical to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a seminar paper at the EEA meetings Crisis, Inequality, and Growth, Aix.
- [15] Ogden, C. K. and I. A. Richards, (1923), The Meaning of Meaning, Harcourt Brace & World Inc, New York
- [16] OECD, (1994), Assessing and Certifying Occupational Skills and Competencie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aris, OECD.
- [17] Thorpe, Vicki, (2015), Assessing Complexity: Group Composing and Newzealand' s N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al Achievement, Doctoral Thesis 2015 at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18] Ryan, Paul, (1993), *Adult Learning and Work: Finance, Incentives and Certification in What Makes Workers Learn: The Role of Incentives in Workplace Education and Training*, Philadelphia, National Center on Adult Literacy.
- [19] Spohrer, J., Maglio, P, P., Bailey, J., & Gruhl, D, (2007), Steps toward a science of service systems, *IEEE Computer*, Vol. 40, No. 1, pp. 71-77
- [20] Unesco,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Paris, Unesco.
- [21] Widerquist, Karl, (2010), Lockean Theories of Property: Justifications for Unilateral Appropriation, *Public Reason* Vol. 2 No. 1, pp. 3-26.

Ki-Oh Jeong(kiohjeong@daum.net)

Ki-Oh Jeong has 23 years of career as a public administrator in education. Since spring 2003 he joined the faculty of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 professor. Being trained in social studies, political science, and education polic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Ohio University, he got his Ph.D in educ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orked at the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for three years until 1995. He then served at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in charge of education reform. From 1998 to 2000 he was invited to teach at the Hongik University, Seoul. After the service at the Hongik University he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Bureau of Human Resource Policy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RD from 2001 to 2003. He published 11 books and 49 pap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policy development,

Appropriation of Human Resources into Human Assets and Its Typology

Kioh Jeong*

ABSTRACT

Appropriation mean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resources to property. John Locke earlier investigated the appropriation process of natural resources into the land property, which grounded the jurisprudential base of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In the same way human resources are transformed into the human assets. Appropriation process, very rarely studied so far, in this case of human property is the focus of this paper. The appropriation of intangible property is by far easier than the appropriation of tangible property. Learning is a process of embodiment, which naturally mea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For the material resources which exist out of human body, appropriation necessary need special philosophical and institutional justification. In the process appropriation for intangibles, investigator found, appropriator and learner either can be same, or can be differentiated. In the former case substantial human assets are created while in the latter relational human assets are built.

After the discussion of appropriation process, Investigator proceeds to the problem of visualizing the invisibles. Evaluation and assessment issue were discussed in this perspective. Qualification system is particularly noted as a system to regulate substantial human assets including their issuing and registration. The work done in this paper would contribute in understanding the law of education and the law of qualification.

Keyword: Service, Appropriation, Substantial human asset, Relational human asset, Transparency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olic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ohjeong@daum.net